제 4 6 5 호

1974. 11. 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888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3

제889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4

◎ 규 칙

제1396호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각과(부)세별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7

제1399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8

제1400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 14

제1401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5

◎ 훈 령

제390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위임전결규정 26

◎ 고 시

제158호 : 도시세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9

제159호 : " " 3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161호 : 서울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정유장)
변경(폐지)……32
제162호 : 사료성분량고시 ……32
제163호 : 사료성분량고시 ……34
제164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35
제165호 :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36
◎ 공 고
제225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대체
지정공고 ……37
제226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37
◎ 예 규
제281호 :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취급요령중 개정요령……38
◎ 사 령……3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조례제888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서의명칭등)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서장) ①소방서장은 소방공경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소방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서의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부소방서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2 번지	중구, 종로구 일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선동 35 번지	동대문, 성동구일원
용산소방서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2가2의 89	용산, 마포구 일원
영등포소방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4가 100	영등포, 관악구 일원
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 3의 72	성북구, 도봉구 일원
서부소방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녹번동 50-1 번지	서대문구 일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8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표

총 계	13,439
일 반 직 계	12,742
별 정 직 계	302
비서 (3 급 을 류 상 당)	5
동장 (3 급 을 류 상 당)	287
아동복리지도원 (3 급 을 류 상 당)	1
비서 (4 급 갑 류 상 당)	1
한강안전관리대요원 (3 급 을 류 상 당)	1

한강안전관리대요원(4급갑류상당)	4
한강안전관리대요원(4급을류상당)	3
2급내지5급계	9,487
2급갑류계	2
2급을류계	10
3급갑류계	56
3급을류계	482
4급갑류계	1,385
4급을류계	1,468
5급갑류계	2,268
5급을류계	3,816
기능직	874
고용원	2,079
소방지제	697
소방령	2
소방경	8
소방위	13
소방사	42
소방원	632

별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표

직급별 / 구분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합계
	3을	4갑	4을	소계	2갑	2을	3갑	3을	4갑	4을	5갑	5을	소계			
총계	294	5	3	302	2	10	56	484	1,393	1,481	2,310	4,448	10,184	874	2,079	13,439
본청	5	1		6				183	318	358	39	24	922	57	306	1,291
구및출장소							4	129	434	530	812	771	2,682	37	337	3,056
동	287			287				30	225	118	769	2,323	3,465	42	325	4,119
지하철본부					1	2	7	22	73	40	24	2	177	446	140	963
소방본부								2	8	13	42	632	697		4	701
기타사업소	2	4	3	9	1	8	45	118	333	416	624	696	2,241	92	967	3,309

40-6 · 씨465호 시 보 1974.11.2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각과(부) 제별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96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각과 (부)제별 사무분장규칙중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각과(부) 제별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마"를 다음과 같이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육원 학생에 관한 시험의 출제·채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재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제3조 제1항중 "운영계"를 "전형계"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가"를 삭제하며 "나" 내지 "바"를 각각 "가" 내지 "마"로, "사"를 "파"로하고 "바"내지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선정된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사. 교육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교육기재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차. 교재수불에 관한 사항

카. 교육진행을 위한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타. 시청각 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형계

가. 4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특별채용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나.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전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다.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99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중 "아"를 "차"로하고 "아"와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동항 제2호중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 보 제

아. 전시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사설 유무선 방송업체의 동원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보 도 제

사. 전시보도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작성관리와 집행

제4조 제2항 제1호중 "라"를 "마"로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시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1호중 "마"를 "사"로하고 "마"와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시에산편성 및 종합조정

바. 재정 금융동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제2항 제1호중 "라"를 "마"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시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2항 제1호중 "라"를 "마"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무계획 지침의 작성과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2항 제1호중 "바"를 "아"로 하고 "바"와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원1계

바. 국가동원중 산업시설 및 수송동원계획의 조정과 통제

사. 국가동원훈련에 관한 조정통제

2. 동원2계

가. 근로동원계획의 조정및 통제

나.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행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2항 제1호중 "자"를 "파"로 하고 "자" 내지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체예비군관리에 관한 사항

차. 전시 서울특별시 행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카. 자체기관 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

타. 자체기관 방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17조 제1항중 "전형계"를 "인사계도계"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자"를 "차"로 하며 "나"를 다음과같이 하고 "마"를 삭제하며 "자"를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조직운영과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

자. 전시행정기구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계

가. 인사제도의 기획연구 및 운영

나. 공무원교육훈련

다. 공무원의교양 및 자질향상

라.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의 해외파견자 추천

바. 인사업무의 E.D.P.S화의 추진

제18조 제2항 제1호중 "차"를 "카"로 하고 "차"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차. 서울시민 이동계획의 수립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2항 제2호중 "아"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아. 수송동원자원(자가용, 관용) 조사관리 및 능력판단에 관한 사항

제21조 제2항 제2호중 "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시세원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제22조 제2항 제1호중 "바"를 "사"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단위 마을금고 인가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2항 제1호중 "라"를 "바"로 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업동원(보사부소관)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26조 제2항 제2호중 "아"와 "자"를, 동조동항제3호중 "라" "마"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 무 계

아. 시설동원자원(병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자. 산업동원자원(위생식품, 의료기기 및 제조업체)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약 무 계

라. 산업동원자원(제약업체 및 의약품)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마. 의약품 비축 계획의 수립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위 동원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7조 제2항 제2호중 "카""타""파"를, 동조동항제3호중 "아"와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 동 계

카. 근로동원 세부집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타. 근로동원자원의 조사및관리

파. 근로동원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구 호 계

아. 전시구호 및 수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 구호물자비축에 관한사항

제31조 제2항 제2호중 "마"를 다음과같이 하고 "사""아""자"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마. 액상 폐기물정화조의 청소, 시공, 설계업에 관한 등록 및 등록취소의 사후관리

사. 분뇨처리업허가 및 허가취소와 사후관리(액상폐기물 정화조내부의 분뇨 및 오니의 처리업에 한한다)

아. 신.개축건물의 액상 폐기물의 정화조설치에 관한 합의

자. 액상 폐기물 정화조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제33조 제2항 제1호중 "사"를 "차"로 하고 "사""아""자"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동원(상공부, 농수산부소관)세부집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 산업동원자원의 능력판단

자. 산업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제34조 제2항 제1호중 "아"를 "차"로 하고 "아"와 "자"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아. 산업동원자원의 조사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자. 동원업체의 동원물자비축 및 기술자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제 2 항제 1 호중 "아"를 "차"로 하고 "아"와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업동원자원(유류 연탄)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자. 물자(유류, 연탄)의 비축에 관한 사항

제 36 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를 "자"로 하고 "아"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 2 호중 "자"를, 동조동항제 3 호중 "자"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 농 정 계

아. 산업동원자원(농산물 및 동가공업체)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수산물계

자. 산업동원자원(수산물 및 동가공업체)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축 산 계

자. 산업동원자원(축산물)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를 "차"로 하고 "아"와 "자"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 4 호중 "사"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 양 정 계

아. 산업동원자원(양곡)의 조사관리 및 집행

자. 양곡비축에 관한 사항

4. 조 작 계

사. 산업동원자원(양곡가공 및 생산시설)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39 조 제 2 항 제 1 호중 "다"를 "바"로 하고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업동원자원(임산물 및 가공품과 제재생산업체)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43 조 제 1 항중 "교통안전계"를 다음에 "시설계"를 삽입하고 동조제 2 항제 3 호중 "카"목을 삭제하며 동항제 4 호를 제 5 호로 하고 동항제 4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4. 시 설 계

가. 교통안전시설계획 및 집행

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다. 교통안전시설의 보수관리

제 44 조 제 2 항 제 1 호중 "카"를 "파"로 하고 "카"와 "타"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카. 전시 치안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타. 시설방호계획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 45조 제 2항 제 2호중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민방공종합계획의 수립및집행

제 46조 제 2항중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시 유무선통신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제 59조 제 2항 제 1호중 "사"를 "아"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설동원자원(토지)의 조사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60조 제 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획정리 1과의 환지 1계는 신당 청량리, 도봉, 화양추가, 망우, 창동 역촌추가, 경인지구의 환지업무를 관장하며 환지 2계는 신림, 신림추가, 시흥, 김포지구의 환지업무를 관장하고 정지계는 환지 1계와 환지 2계가 분장하고 있는 지구의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사무를 관장하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2조(건축과) ①건축과에 건축행정계, 건축계와 미관계를 두고 건축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계장과 미관계장은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②건축과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계
   가. 건축관계 제증명발급
   나.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소원 및 소송의 처리
   다. 건축사의 지도감독
   라. 건축행정의 연구 발전
   마. 건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바. 시설동원자원(건물)의 조사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사.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 축 계
   가. 건축허가, 준공검사및공사감독
   나.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다. 위법 및 위험건물에관한사항
   라. 건축제획의 수립 및 구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마. 신(개)축건물에 부설되는 액상폐기물 정화조설치에 관한 협의

바. 건축에 따른 정화조, 옹벽, 석축, 공작물의 안전도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미 관 계

가.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통제와 지도

나. 특정가구 정비지구내 건축계획의 수립

다. 용도지역지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건축법 및 관계규정의 정비

마. 기타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

제 68조 제 2항제 1호중 "바"를 "자"로 하고 "바" "사" "아"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 2호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수행정계

바. 운송동원 세부집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운송동원자원의 능력판단

아. 운송동원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사항

2. 운수운영계

마. 버스터미날에 관한 사항

제 69조 제 2항 제 2호중 "라"와 "마"를 동조동항제 3호중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수 2계

라. 화물터미날에 관한 사항

마. 운송동원자원(화물자동차등)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운수 3계

마. 운송동원자원(영업용, 승용차등)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70조 제 2항 제 4호중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 비 계

자. 차량정비업체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72조 제 2항 제 1호중 "마"를 "아"로 하고 "마" "바" "사"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 3호중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행정계

마. 시설(건설업체)동원 세부집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시설동원능력판단

사. 시설동원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기관리계

사. 서설동원자원(중기 기타 건설장비)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 74 조 제 2 항 제 1 호중 "마"와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긴급복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바. 거부계획집행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1974 년 11 월 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400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및 소방관 파출소, 소방관출장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하부조직) ①소방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방호과와 소방과를 두고, 과장은 소방경정,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으로 보한다.

②방호과에 방호계와 예방계를 두고, 소방과에 소방계와 장비계를 두며 각 계장은 소방경위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제 3 조(사무분장) 소방서의 각 계별 분장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제 4 조(소방관 파출소등) ①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관 파출소 또는 소방관 출장소를 둔다.

②소방관 파출소 또는 소방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③소방관 파출소 또는 소방관 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 방 서 사 무 분 장

과별	계별	분 장 사 무
소방과	소방계	1.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기밀에 관한 사항
		3. 의식전례 및 소방연혁에 관한 사항
		4. 직원신분 상벌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
		5. 직원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직원동태에 관한 사항
		7. 서내단속과 숙직에 관한 사항
		8. 직원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근무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소방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11.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원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3. 문서시행방법 및 내용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4. 성안문서의 등제 우표 및 수불에 관한 사항
		15. 문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금에 관한 사항
		17. 과내서무 및 타과,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비계	1.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부속품등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류보급 불출에 관한 사항
		4. 운전요원 기술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과별	계별	분장사무
		5. 소방통신에 관한 사항 6. 무기 및 탄약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입물품 및 수리입회에 관한 사항 8. 예산편성자료 제출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0. 재중빙서작성 및 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11. 경리장부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12. 봉급제안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3. 물품구입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4. 국, 시유재산관리와 당선에 관한 사항 15. 비품 및 소모품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6. 급대여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17.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방호과	방호계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진압소방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화재현장 조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무허가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취급주입 교양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수난구조 협조에 관한 사항 9.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10. 방호관계 민원서류 조사 처리 11. 과내서무 및 과내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예방계	1. 방화사항 제품선전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 신고에 관한 사항 3.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정비 확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예방제지정에 관한사항 6. 소방훈련지도에 관한 사항 7.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증명에 관한 사항 9. 방화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10. 부정소화기구 및 약품판매단속에 관한 사항 11. 화재경계지역 지정승인 재정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관계 민원서류 조사 처리 13. 건축허가동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4. 건축관계민원서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별표 2

소방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부소방서	태평로 소방관 파출소	중구태평로1가2	중구중 무교동·다동·태평로1, 2가, 남대문1,2,3,4, 5가·을지로1,2가·소공동·봉래1,2가·도동1,2가 회현동1,2,3가·충무로1, 2가·남산동1,2,3 가·명동1, 2가·북창동·남창동·양동·동자동 삼각동·장교동·수하동·수표동·서울역구내· 입정동 종로구중 관철동·서린동·세종로(76-216번지)·종로 1가·청진동
	종로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묘동59	종로구중 종로2, 3가·관수동·장사동·공평동·인사동 돈의동·권농동·익선동·와룡동(3-173번지) 낙원동·운이동·경운동·관훈동·안국동·제동· 계동·원서동·가회동·화동·봉익동·훈정동· 묘동
	충무로 소방관 파출소	중구충무로3가 39	중구중 을지로3, 4가·충무로3, 4가·예장동·남학동 주자동·저동1, 2가·초동·산림동·주교동·인 현동1, 2가·필동1, 2, 3가·예관동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구소방서	을지로 6가 소방관 파출소	중구을지로7가1	중구중 을지로5, 6, 7가·광희동1, 2가·쌍림동·장충동1, 2가·충무로5가·묵정동·오장동·방산동
	연건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연건동34-1	종로구중 예지동·인의동·연지동·동숭동·충신동·효제동 연건동·종로4,5,6가, 혜화동·명륜동1,2,3,4가·이화동·원남동·와룡동(1-2번지)
	신교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신교동70-1	종로구중 신교동·청운동·궁정동·효자동·창성동·통의동·적선동·통인동·옥인동·누상동·누하동·체부동·필운동·내자동·사직동·도염동·내수동 당주동·신문로1, 2가·세종로(1번지)·중각동·수송동·전지동·사간동·송현동·소격동·팔판동·삼청동
성동소방서	행당 소방관 파출소	성동구도선동35	성동구중 행당1,2,3동·사근동·도선동·용봉동·마장1 2동·신당8동·하왕십리1,2동·신당1동·성수1가동·상왕십리동 동대문구중 - 용두1동·답십리3동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성동소방서	성수소방관파출소	성동구송정동 37-2	성동구중 성수2가동·자양동·청담동·도곡동·대치동·삼성동·내곡동·신원동·염곡동·포이동·제포동·수서동·일원동·자곡동·세곡동·율현동·중곡동 구의동·화양동
	신당소방관파출소	성동구신당동 292-47	성동구중 신당1동·신당2,3,4,5,6,7동·금호1,2,3,4가동·옥수동·난포동·잠원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압구정동·역삼동·논현동·신사동·학동
	천호소방관파출소	성동구성내동 320-1	성동구중 하일동·상일동·고덕동·명일동·암사동·길동·둔촌동·천호동·성내동·풍납동·송파동·가락동 석촌동·삼천동·방이동·이동·거여동·오금동·장지동·문정동·마천동·신천동·잠실동
	용두소방관	동대문구용두동 12-4	동대문구중 창신1,2,3동·숭인1,2동·신설동·보문1,2동 용두2동·제기1,2,3동
	청량리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청량리동2-5	동대문구중 전농1,2,3,4동·답십리1,2,4동 청량리1,2동·휘경동·회기동·이문1,2,3동
	중화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중화동 14부력4	동대문구중 면목1,2동·상봉동·중화동·묵동 망우동·신내동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용산소방서	한강로소방분파출소	용산구한강로2가	용산구중 한강로1,2가 . 용산동1,3,4,5,6가 . 남영동 . 문배동 . 용문동 . 효창동 . 도원동 신계동 . 청파동2,3가 . 원효로1,2가
	후암 소방분파출소	용산구 후암동 244-54	용산구중 후암1,2동 . 청파동1가 . 서계동 . 갈월동 용산동2가 . 이태원2동 .
	이태원소방분파출소	용산구 이태원동 3-5	용산구중 이태원1동 . 한남동 . 보광동 . 주성동 . 동빙고동 . 서빙고동
	이촌 소방분파출소	용산구 이촌동 212-3	용산구중 이촌1,2동 . 한강로3가 . 원효로 . 원효로 3,4가 . 신창동 . 산천동 . 청암동
	도화 소방분파출소	마포구 도화동 180-6	마포구중 아현1,5동 . 공덕동 . 신공덕동 . 도화동 . 용강동 . 토정동 . 마포동 .
	대흥 소방분파출소	마포구 대흥동 2-6	마포구중 아현2,3동 . 대흥동 . 염리동 . 현석동 . 노고산동 . 신수동 . 구수동 .
	서교 소방분파출소	마포구 서교동 394-42	마포구중 동교동 . 서교동 . 망원동 . 합정동 . 상수동 하수동 . 당인동 . 창전동 . 신정동 . 하중동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분파출소	영등포구영등포동 4가101	영등포구중 영등포동1,2,3,4,5,6,7,8가 문래동1,2,3,4,5,6가 . 도림1,2동 . 신길1,2,3,4동 . 여의도동 . 대방1,2동 신대방동 . 당산동1,2가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등포소방서	노량진소방관파출소	관악구 노량진동 153-18	관악구중 흑석 1,3 동 . 본동 . 노량진 1,2,3 동 . 상도 1,2,3 동
	당산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9-3	영등포구중 당산 4,5,6 가 . 양평 1 동(1,2,3 가) 양평 2 동(4,5,6 가)
	화곡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화곡동 61-8 .61-156	영등포구중 가양동 . 마곡동 . 등촌동 . 목동 . 염창동 과해동 . 방화동 . 개화동 . 오쇄동 . 오곡동 . 신월동 . 화곡동 . 공항동 . 내발산동 외발산동
	사당 소방관파출소	관악구 사당동 733-1	관악구중 동작동 . 사당 1,2,3 동 . 봉천 3,4 동 . 흑석 2 동
	구로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구로동 409	영등포구중 구로 1,2,3 동 . 신도림동 .
	시흥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독산동 170-1	영등포구중 시흥 1,2 동 . 신림 1,2,3 동 . 봉천 1,2 동 . 독산동(공단관할 제외한 잔여지역)
	오류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궁동 213-29	영등포구중 오류동 . 궁동 . 항동 . 개봉동 . 천왕동 . 고척동 . 온수동 . 신정동
	공단 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구로동 188	(1단지) 구로 3 동 170-3 호 - 756-4 호 독산동 117-138-9 호 가리봉동 138-27 호 - 572-12 호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2단지) 가리봉동 46-21호-606-3호 (3단지) 가리봉동 310-323-4호 독산동 632-871-35호
북부소방서	종암소방관파출소	성북구 종암동 3-72	성북구중 종암1,2동.하월곡1,2동.상월곡동.석관동.안암2동.장위1,2동
	미아소방관파출소	도봉구 미아동 1708	도봉구중 미아10동.월계동.번동.수유1,2동.미아4동 성북구중 정능1,2,3,4동 도봉구중 미아1,2,3,5,6,7,8,9동
	돈암소방관파출소	성북구 삼선동 4가 349	성북구중 성북1,2동.삼선1,2,3동.동소문동.안암1동.동선1,2동.돈암1,2동
	창동소방관파출소	도봉구 방학동 195-2 부럭 4	도봉구중 창동.우이동.쌍문동.공능동.하계동.계동.상계1,2,3동.도봉동.방학동.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소방서	불광동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누년동 12-23	서대문구중 홍은동·녹번동·불광동·갈현동·구산동·대조동·응암동·역촌동·신사동·구구파발·진관외동·진관내동·홍제동·구기동·평창동·부암동·홍지동·신영동.
	연희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연희동 113-4	서대문구중 창천동·연희동·성산동·상암동·수색동·증산동·북가좌동·남가좌동·신촌동·봉원동·대신동·중동.
	서대문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의주로 1가 51	서대문구중 순화동·합동·미근동·의주로1,2가 중림동·만리동1,2가·충정로1,2,3가·교남동·평동·송월동·냉천동·천연동·옥천동·옥파동·교북동·행촌동·영천동·현저동·북아현동·대현동·정동·서소문동.

규　　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401 호

서울특별시사무분
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제1항과 제2항제2호및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에 제4호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호마목중 "기계화학"다음에 "섬유"를 삽입한다.

① 공업과에 공정계, 중소기업계, 표준계, 기전계와 화섬계를 두고 공정계장, 중소기업계장과 표준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전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화섬계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②

2. 중소기업계
　가.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나. 중소기업자금지원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라.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시책의수립
　마. 수출관계통계와 기타 수출업무

3.
　가. 표시허가업체의 표시변경에 관한 처분 및 사후 관리

4. 기전계
　가. 기계, 선박,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용 원자재소요량 증명에 관한 사항
　나. 기계, 선박, 전기 및 전자제품의 특혜관세 원산지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5. 화섬계
　가. 화공, 섬유, 건축자재, 요업, 금속, 주물, 잡화 및 일용품분야의 수출용원자재소요량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나. 화공, 섬유, 건축자재, 요업, 금속, 주물, 잡화 및 일용품의 특혜관세 원산지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4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훈령제 390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
사업소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과장과 공장장에게 전결하게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한계를 명백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과장및 공장장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방법)① 각과장 및 공장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결재사항에 대하여 각각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합의및 협조) 전결사항중 타과 또는 타공장과 관련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소장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결위반확인여부) 문서통제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결재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각과공통사항) 각과장 및 공장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계장은 제외)
2. 소속직원의 관내출장명령, 시간외 근무명령 및 외출허가
3. 경미한 사항의 통지, 독촉및 조복

제7조(서무과장)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청중단속 및 청사경비
2. 당숙직의 명령
3. 방화시설의 설치

4. 재정보증서의 정비 및 확인
5.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이송
6. 공무원의 연금확인 및 제급여 청구의 확인
7. 공무원연금카드의 송부 및 송부의뢰
8. 기여금 불입내역서 제출
9. 정기보고(주, 월, 분기, 연보)에 관한 사항
10. 경미한 사항의 통지독촉 및 조복
11. 민원서류 접수배부
12. 관인관리
13. 차량관리
14. 공무원임용수속에 따른 조회
15. 4급이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신고처리
16. 공무원의 복무단속
17.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정정요구
18. 소속공무원의 재직 및 퇴직증명발급
19. 고용원, 임시직원의 신분증발급
20. 의무 위반자 통제보고
21.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수집
22. 청사유지관리
23. 수요가 모집에 관한 사항
24. 가스공사비 납입통지
25. 비품 및 물품의 출납

제 8 조(과징과장) 과징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가스전누기, 수선작업의 요구
2. 가스전 번호부여
3. 일별고지서작성 집계표에 관한 사항
4. 가스미터기 교체 및 검사요구
5. 개인별 조정징수 실적부 처리
6. 독촉장 발급
7. 징수일보처리
8. 과징업무 제통계 및 월보
9. 가스사용 정지처분 및 해제처분
10. 수요가의 가스 사용중지 신청
11. 가스사용신고서

제 9 조(생산과장) 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공사 감독원 임명
2. 준공검사명령
3. 공사하자검사명령

4. 발열량 측정기록
5. 분석 실험
6. 전기일일 점검
7. 전기절연 시험
8. 운전성적표 작성
9. 기계 및 기기일일 점검
10. 작업지시
11. 가스미터의 수리 및 점정
12. 가스발생시설의 연구개발
13. 가스발생시설의 유지관리
14. 가스발생시설의 안전관리

제 10 조 (공무과장)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공사대장 및 도면취급
2. 안전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3. 연소기구 및 배관부속물 재료연구개발
4. 안전원교육 및 안전관리제몽
5. 가스배관설계 및 가정관 설계시 공감독
6. 가바나실 유지관리
7. 보수용 공구취급
8. 가스미터 교체
9. 관말압력 검사
10. 가스공사현장 감독원 임명
11. 가스공사 준공검사 명령
12. 가스공사 하자검사 명령
13. 검수전원부 작성
14. 수선작업 명령
15. 수취기 작업명령
16. 재료사용에 관한 사항
17. 누기탐지의뢰

제 11 조 (공장장)

1. 청중단속 및 청사경비
2. 당숙직의 명령
3. 안전관리 순찰일지 점검
4. 생산일보, 월보 재출
5. 생산원고 검수
6. 가동일지 점검
7. 가스고장 신고처리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제 2493호(1966. 6.20)및 서울특별시 제 154호(74. 10.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0.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화전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내리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3. 사업규모 가. 도로폭 계획도로 35.0 m 중폭 10.0 m (차도)
   나. 연 장 91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4. 10. ~ 7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고양군신도면화전리	737-1	답	893	737-7	답	35	화전리 382	박 철 노	
2	〃	737-5	〃	533	737-8	〃	363	삼양동 111	권 의 성	
3	〃	737-2	〃	105	737-6	〃	53	〃	〃	
4	〃	738-3	〃	369	738-3	〃	34	화전리 559	이 경 우	
5	〃	738-1	〃	615	738-1	〃	242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6	고양군신도면화전리	736-3	답	82	736-5	답	10	화전리 160	윤정호	
7	〃	739-4	답	730	739-5	답	247	길음동 535	김용채	
8	〃	740-1	답	120	740-6	답	30		국	
9	〃	758-2	전	2,334	758-3	전	273	남가좌동 262-291	변쾌수	
10	〃	757-6	잡	2,510	757-7	잡	18	서도면강매리 86	선영배	
11	〃	768-23	전	976	768-30	전	582		국	
12	〃	561-10	전	219	561-25	전	12	화전리산 72	이재윤	
13	〃	545	답	165	545-2	답	123	〃 168	〃	
14	〃	561-6	전	670	561-23	전	106	화전리 561	김광식	
15	〃	562-6	전	315	562-51	전	110	현천리 163	민갑식	
16	〃	562-30	대	7	562-53	대	1	화전리 559	유상진	
17	〃	549-16	〃	20	549-36	대	14	〃	〃	
18	〃	562-32	〃	21	562-32	대	5			
19	〃	549-13	〃	38	549-35	대	5	화전리 549	하건조	
20	〃	549-17	〃	37	549-17	〃	29	화전리 549-17	최창순	
21	〃	549-21	〃	19	549-33	〃	0.3	〃 549	박종훈	
22	〃	549-27	〃	38	549-27	〃	37.7	〃	유인준	
23	〃	549-25	〃	4	549-34	〃	3.8	〃	이은성	
24	〃	549-24	〃	16	549-24	〃	14	화전리 559	유반노	
25	〃	549-3	답	2,526	549-29	답	360	〃	〃	
26	〃	549-22	대	291	549-38	대	6	종무로1가23-16	유영준	
27	〃	546	답	1,580	546-2	답	324	화전리 168	김봉우	
28	〃	544-8	답	931	544-8	답	23	종로6가12-43	변운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표시 (주요대장)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29	신도면 화전리	542	답	785	542-2	답	238	녹번동 53-113	최세영	
30	〃	731	답	1,290	731-2	답	324	화전리산 51	조종성	
31	〃	730-1	답	941	730-4	답	121	화전리 562	황봉성	
32	〃	549-12	대	72	549-12	대	72	화전리 549	박종근	
33	〃	541-1	답	1,240	541-1	답	1,240	봉원동 23	강인식	
34	〃	541-2	답	1,230	541-2	답	1,230	화전리 64	최복인	
35	신도면 도내리	692	잡	1,178	692-2	잡	183	아현동 385-49	서도월	
36	화전리	542-31	대	19	542-31	대	19	화전리 549-17	최창순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동법제 26조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건설국건설행정과와 마포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 신공덕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만리동 - 공덕동 간도로신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 = 1,340 m, B = 28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 74.5.10 - 74.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소재지 : 별첨조서

7.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및 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

서 울 도 시 계 획 시 설
(시 외 버 스 정 류 장) 변경 (폐지)

1. 서울특별시관내도시계획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을 다음과 같이 변경 (폐지)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1. 1

서 울 특 별 시 장

변 경 (폐 지)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외버스정류장	성수동 1 가 670 의 41 외 17 필지	4,620 ㎡ (1,400평)	폐 지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 성동구청에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

사 료 성 분 량 고 시

사료관리법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4. 11.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료공장명 : 신촌사료주식회사

2. 사료공장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중동 93번지

3. 사료공장대표자 : 강 금 로

등록번호	사료의명칭	사료의용도	사료의성분				유효기간
			최소량		최대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이상%	이상%	이하%	이하%	
7-10	젖메기송아지배합사료	2~3 개월	19.0	3.0	7.0	9.0	74.11.1부터 76.10.31까지
7-11	젖소중송아지배합사료	4~6 개월	16.0	3.0	9.0	9.0	〃
7-12	젖소큰송아지배합사료	7~18개월	13.0	3.0	10.0	11.0	〃

등록번호	사료의명칭	사료의용도	사료의성분 최소량 조단백질	조지방	최대량 조섬유	조회분	유효기간
			이상 %	이상 %	이하 %	이하 %	
7-25	임신전기배합사료	임신6개월까지	14.0	3.0	10.0	11.0	1974.11.1부터 1976.10.31까지
7-14	젖떼기돼지배합사료	체중 11-20	18.0	3.0	6.0	8.0	〃
7-15	어린돼지 〃	2-4개월	15.0	3.0	6.0	8.0	〃
7-16	중돼지 〃	5-6개월	14.0	3.0	8.0	10.0	〃
7-17	미임신돈 〃	9- 임신	12.0	3.0	10.0	10.0	〃
7-18	육계종계 〃	육계종계	15.5	3.0	7.0	13.0	〃
7-19	양계용농축사료 〃	양계용농축사료	16.0	2.0	6.0	12.0	〃
7-20	큰병아리후기 〃	17- 초산	12.0	3.0	7.5	9.0	〃
7-21	부로일러후기2 〃	출하일주일전부터 출하시까지	16.0	3.0	6.0	9.0	〃
7-22	고깃소후기 〃	고깃소후기	11.0	3.0	10.0	11.0	〃
7-23	양돈용농축사료 〃	양돈용 농축사료	14.0	2.0	6.0	10.0	〃
7-24	축우용농축사료 〃	축우용 농축사료	14.0	2.0	6.0	10.0	〃
7-13	착유2 배합사료	배유량 20kg 이상	14.0	3.0	10.0	11.0	〃

농축사료배합비율표

원료명 \ 제품명	양계용농축사료	양돈용농축사료	축우용농축사료	비고
옥수수	60 %	70 %	80 %	
기타곡류	10	10	10	
기타박류	26	18	9	
기타	4	2	1	
계	100 %	100 %	100 %	

◎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

사 료 성 분 량 고 시

사료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료성분량을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1974. 11.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료공장명 : 신촌사료 주식회사
2. 사료공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동 93 번지
3. 사료공장대표자 : 강 금 로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 최소량 조단백질	최소량 조지방	최대량 조섬유	최대량 조회분	유효기간
			이상	이상	이하	이하	
7-1	어린병아리배합사료	0 - 6 주	19.0%	3.0%	6.0%	8.5%	74.11.1 부터 75.10.31까지
7-2	중병아리 배합사료	7 - 12 주	16.0	3.0	7.0	9.0	〃
7-3	큰병아리 〃	13 - 16 주	13.0	3.0	7.5	9.0	〃
7-4	산란초기 〃	초산 - 20 주	15.0	3.0	7.0	13.0	〃
7-5	산란중기 〃	21 - 35 주	14.5	3.0	7.0	13.0	〃
7-6	산란말기 〃	36 주이상	14.0	3.0	7.0	13.0	〃
7-7	산란종계 〃	산란종계용	16.0	3.0	7.0	13.0	〃
7-8	부로일러전기배합사료	4 주까지	19.0	3.0	6.0	8.0	〃
7-9	부로일러후기 〃	4 주이상	17.0	3.0	6.0	8.0	〃
7-26	고기소전기 〃	고기소전기	15.0	3.0	9.0	11.0	〃
7-27	고기소중기 〃	고기소중기	13.0	3.0	10.0	11.0	〃
7-28	식물성박유기초 〃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35.0	3.0	8.0	7.0	〃
7-29	임신후기(축우) 〃	임신6개월이후	15.0	3.0	10.0	11.0	〃
7-30	착유1배합사료	비유량 20kg 이하	13.0	3.0	10.0	11.0	〃
7-31	갓난돼지배합사료	체중 5-10 kg	19.0	3.0	5.0	8.0	〃
7-32	중돼지후기배합사료	7 - 8 개월	13.0	3.0	8.0	10.0	〃
7-33	임신전기배합사료	임신 2 개월까지	13.0	3.0	10.10	10.0	〃
7-34	임신후기배합사료	임신 2 개월이후	14.0	3.0	10.0	10.0	〃
7-35	포유모돈 포유모돈	포유모돈	15.0	3.0	10.0	10.0	〃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 서울특별시고시 제 108 호 (72.7. 27)로 시설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4.10.31

서 울 특 별 시 장

1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동숭동

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숭아파트 진입도로

3 . 사업규모 : L = 170 ㎜ . B = 8 ㎜

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4.10 - 74.12.31

6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7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동숭동				129-336	대	0.2	동숭동 129-208	유점열	저상건물등
2	〃				129-335	〃	0.8	〃 〃	〃	〃
3	〃				129-333	〃	0.5	〃 129-205	최수호	〃
4	〃				129-332	〃	4.7	〃 129-184	문재안	〃
5	〃				129-318	〃	3.1	〃 129-129	박희락	〃
6	〃				129-320	〃	5.4	〃 129-131	김봉용	〃
7	〃				129-321	〃	5.8	〃 129-133	김기용	〃
8	〃				129-323	〃	5.1	보광동 265-815	유병열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9	동숭동				129-319	대	7	동숭동 129-130	송용권	지상건물등
10	〃				31-29	〃	9.8	〃 31-3	박충집	〃
11	〃				31-8	〃	13	〃 〃	〃	〃
12	〃				31-30	〃	4.1	도화동 181-1	남용훈	〃
13	〃				130-65	〃	0.3			

◎서울특별시고시제 16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학 교 시 설 조 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학교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4번지부근	18,940 ㎡	관악고교

나.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대지	소로	2 류		8 m	167 m	양평동 2가 25	양평동 2가 24	교지내
〃	〃	〃		〃	105 m	양평동 2가 26	〃	〃

※ 범례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포구청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25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시 수출품생산 지정업체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되었기에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10.　.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체지정업체

지정취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1518	금융공익사	영등포가양동 194-2	이명호	여행용가방	1518	금융공업(주)	영등포가양동 194-2	이명호	여행용가방

◎서 울 특 별 시 공 고 제 22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와 제55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변경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에 배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　.

서 울 특 별 시 장

예 규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 취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4.10.3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예규제 281 호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취급요령중 개 정 요 령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 취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제 10-1 호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한다.

"첨 부 서 류"

1. 시설 및 자산상황조서 (제 11 호 서식)
2. 민간인 신원진술서 6 매 (사진첨부)
3. 허가증 및 대장 부착용 사진 2 매 (3.5 . 4.5)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법인일때) 1 부

부 칙

이 요령은 1974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4 . 11 . 1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보 최성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진귀

복직을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가원보 김경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해제함.

수택건설과 (시민회관파견) 지방전기기사 경영호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농 정 과 지방수의사 문 현 철
74.10.29 서울특별시 지방공
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7.23 감봉6월처분을
(발령제 675 호) 동일자로 취소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보 최 성 묵
74.10.29 서울특별시 지방공
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7.23 자 파면처분을
(발령제 675 호) 동일자로 변경
감봉6월에 처함.

관 악 구 지방행정서기 황 광 용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서기 정 영 욱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정 웅 진
중 구 지방행정서기 정 경 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4.7.19
자 (발령제 672 호) 징계처분 (감
봉1월)을 동일자로 변경하고
견책에 처함.

성동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두 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4.8.26 자
(발령제 746 호) 징계처분 (파면)
을 동일자로 변경하고 감봉6월에
처함.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 1974.11. 2

종 로 구 지방행정사무관 김 인 배
지방공무원법제 66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74.11.2 그
직을 면함.

양 정 과 행정서기보 박 경 백
농 정 과 지방농림기원 문 현 식
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 라 용
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영 수
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 동 만
연로과 파견 (74.11.3-74.12.
31) 근무를 명함.

◎ 1974. 11. 3

동대문구 보건소장 지방의무기좌 이인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도봉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 지방의무기좌 맹시선

도봉구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도봉구 보건소장 지방의무기좌 신기준

동대문구보건소장에 보함.

동대문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윤형국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4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서 울 특 별 시 장